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03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 김주영・이학영・문정복

김태선 · 안호영 · 박홍배

박 정・강득구・박정현

박상혁 • 박균택 • 유종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 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 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			
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			
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			
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7년 12월 31일</u>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